

# 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71,624,928	5,148,748
일반회계	166,606,168	4,998,185
특별회계	5,018,760	150,563
기타특별회계	5,018,760	150,56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17,473	12,524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32,778	6,983
주차장 특별회계	3,013,839	90,415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59,264	10,778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964,000	28,920
기반시설 특별회계	31,406	94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71,158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5,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